퇴직보험 상품요약서

가.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

□ 단체 및 피보험단체

3191-10400708-10005380

① 단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(퇴직금제도)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.
② 피보험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.

□ 보험계약자

이 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.
①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
②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
③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

□ 피보험자의 자격

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,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.

□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.

□ 상품의 특이사항

① 납입하신 보험료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됨으로써 부채비율이 감소합니다.
②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③ 임금총액의 최고 0.2%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④ 퇴직금 및 해약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수급권보장이 가능합니다.
⑤ 급부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191-10400708-10005380

3191-10400708-10005380

나. 급부금 지급사유,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

□ 지급사유

급부금의 지급사유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, 피보험자에게 그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는 급부수급권을 취득합니다.

① 정년퇴직급부
: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후 정년 퇴직한 때 지급

② 중도퇴직급부
: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후 사망 이외의 사유로 정년 전에 퇴직한 때 지급

③ 사망퇴직급부
: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후 사망으로 인해 퇴직한 때 지급

④ 기타 피보험자가 퇴직금 관련규정상에 정한 일정조건을 충족한 후 퇴직한 때 해당 퇴직급부를 지급

□ 지급계산

회사는 급부금 지급사유에 의해 수익자가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에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□ 지급제한 사항

퇴직급부 지급의 제한사항은 단체의 퇴직금규정에 따릅니다.

3191-10400708-10005380

3191-10400708-10005380

3191-10400708-10005380

다. 보험료 분석표 예시

① 계약자는 보험료 등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.

라. 보험료 산출기초

3191-10400708-10005380

□ 보험료의 구분

① 기본보험료
: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② 재정안정화보험료
: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.
③ 연금충실화보험료
: 연금급부를 충실화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급부금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.

□ 보험료계산이율

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보험료계산이율은 연복리 4.0%입니다.

□ 준비금적립이율

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하는 준비금적립이율은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습니다.
① 확정금리형 : 연복리 3.5 %
상품개정을 통한 이율변경시에는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
② 금리연동형
매월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로 결정합니다.
공시이율 : 회사의 산출시점 직전 6개월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되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하며,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%를 적용합니다.
지표금리는 회사채수익률, 국고채수익률, 통안증권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.
이율체계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합니다.

3191-10400708-10005380

□ 예정사업비율

① 보험료기준

구분	순보험료	예정사업비율
월납	833만원이하	1.5%
	833만원 초과~2,500만원이하 부분	1.0%
	2,500만원 초과~4,167만원이하 부분	0.8%
	4,167만원 초과 부분	0.6%
3개월납	2,500만원이하	1.5%
	2,500만원 초과~7,500만원이하 부분	1.0%
	7,500만원 초과~12,500만원이하 부분	0.8%
	12,500만원 초과 부분	0.6%
6개월납	5,000만원이하	1.5%
	5,000만원 초과~15,000만원이하 부분	1.0%
	15,000만원 초과~25,000만원이하 부분	0.8%
	25,000만원 초과 부분	0.6%
연납	10,000만원이하	1.5%
	10,000만원 초과~30,000만원이하 부분	1.0%
	30,000만원 초과~50,000만원이하 부분	0.8%
	50,000만원 초과 부분	0.6%

② 준비금기준

경과책임준비금	예정사업비율
10억이하 부분	0.60%
10억초과~30억이하 부분	0.58%
30억초과~50억이하 부분	0.55%
50억초과~100억이하 부분	0.53%
100억초과~500억이하 부분	0.50%
500억초과~1000억이하 부분	0.45%
1000억초과 부분	0.40%

3191-10400708-10005380

마.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

□ 배당금의 지급

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합니다. 다만, 거치연금전환제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보험자(수익자)에게 지급합니다.

3191-10400708-10005380

□ 산출기준

계약자배당은 사업년도 산출방식으로 초년도는 계약응당일부터 당사 사업년도 말일인 3월 31일까지, 차년도 이후는 당사 사업년도 구간(4/1 ~ 3/31)을 산출기간으로 하여 펀드별 이자율차배당률로 부리하여 산출합니다.

□ 계약자배당금 적립이율

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년도말의 보험료적립금에 가산하여 해당 단체의 준비금 적립이율로 계산됩니다.

□ 과거 5년간의 배당률 및 배당실적

구분		FY'06	FY'07	FY'08	FY'09	FY'10
이자율차 배당기준율	확정 금리형	4.6%	4.8%	6.3%	6.0%	4.8%
	금리 연동형	5.0%	5.0%	6.3%	5.5%	4.4%

※ 퇴직보험 판매개시일 1999.04.01

바.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,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단,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이전수수료(0.4%)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 처리합니다.

3191-10400708-10005380